

시민 중심, 으뜸 정읍

생산등록번호	농업정책과 -4091
등 록 일	2026. 2. 23.
결 재 일	2026. 2. 23.
공 개 구 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귀농귀촌팀장	농업정책과장	농업기술센터소장
김보미	최민서	오미경	강용원
협조자	전결 2026. 2. 23.		

2026년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추진계획

주 요 내 용

- 사업비용 : 2,000천원(도비 1,000 시비 1,000)
- 사 업 량 : 20건(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건수)
- 지원금액 : 보조금 100천원/건당
- 지원대상 : 주택 및 농지 정보제공자



정 읍 시
[농업정책과]

2026년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추진 계획

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으로
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

I 사업개요

- ☐ 사업명 : 2026년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
※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(도비 보조)의 세부사업
- ☐ 사업기간 : 2026. 3. ~ 11월 (사업비 소진시 마감)
- ☐ 사업비 : 2,000천원(도비 1,000, 시비 1,000)
- ☐ 사업량 : 20건(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건수)
- ☐ 사업추진 :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(행정성과평가 읍면동 공통지표 반영)

II 지원내용

- ☐ 지원방향 :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
- ☐ 사업내용 :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수집 활동 및 정보 관리 수당(보조금) 지급(현장 안내 포함)
- ☐ 지원대상 : 정보제공자(마을이장, 주민 및 마을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등)
- ☐ 지원금액 : 100천원/건당(주택 또는 농지)
- ☐ 정보제공 대상 :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농촌의 주택 및 농지

○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

- ①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,000㎡ 이상
- ② 여러 지면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
- ③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
- ④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
- ⑤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.
- ⑥ 제외대상 :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,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,
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

※ 공동소유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(문중 소유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),
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 신청 가능

○ 정보 관리 및 변동사항 보고

- 제공된 정보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정보제공일부터 3년간 관리
- 정보 제공 내용 : 매매 또는 임대 구분, 부동산의 위치·면적·가격·사진,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, 정보제공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
- 행정기관(특별자치도 및 시)은 총괄 관리(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), 정보제공자는 분기별 변동사항을 농업정책과(귀농귀촌팀)에 보고
⇒ 게시내용 : 현장사진과 행정기관 연락처, 면적, 희망가격 등

Ⅲ 추진계획

- 추진방향 : 2026년도 행정성과평가 읍면동 공통지표 반영, 사업 추진
- 추진평가 : 연2회(5월말 / 11월말 기준)
- 평가내용 :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건수(홍보 및 구축 건수)
 -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사업 홍보(상·하반기 각 3건)
 - 주택 또는 농지 정보 구축 건수(상·하반기 누계 1건)

지 표 명	가 중 치		비 고
	상반기 (5월말)	하반기 (11월말)	
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사업 홍보	100%	30%	
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건수	-	70%	

▶ 농촌동이 아닌 시내동 제외(시기동, 초산동, 연지동)

□ 추진(정보 구축) 방법

① 토지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및 보조사업 추진

※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읍면동 발생시 목표량 달성 읍면동이 사업추진

- 추진기간 : 2026. 3. ~ 11월

- 추진방법

- 홍보 및 안내 :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, 주민 등(정보제공자)
- 접수 및 확인 :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
 - ※ 허위 자료 식별을 위한 관리·감독 철저(현장 및 서류확인 등)
-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(보조사업자=정보제공자)

② 보조금 지급 및 행정성과평가 반영

- 보조금 지급 : 정보제공자에게 건당 100천원 보조금(정보제공수당) 지급
- 행정성과평가 : 이·통장회보 등의 홍보 실적 및 교부신청서의 정보제공 건수를 읍면동 실적에 반영, 행정성과평가 추진(상반기, 하반기)

Ⅲ 추진일정

- ☐ 추진계획 통보 ‘26. 2월
- ☐ 보조사업 추진 ‘26. 3월~11월
- ☐ 보조금 지급 ‘26. 4월~12월

붙임 보조사업 신청 구비서류(서식) 1부. 끝.